

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

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3조(수당)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여비)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는 「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